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주요내용

□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	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잠정기준 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잠정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0.01mg/kg(ppm)설정근거 : 기기분석으로 검출 가능한 최소 농도(EU), 독성학적으로 인체의 위해성이 없는 수준(일본), 해외에서 일률기준으로 이미 통용

- * (PLS 적용 예시)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배추 농약 성분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여 '잔류농약 조사' 결과 0.03ppm 검출 시 종전에는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됨

□ (목적)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 * 식약처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공전으로 작성

□ (시행시기) 1차·2차에 나누어 도입 (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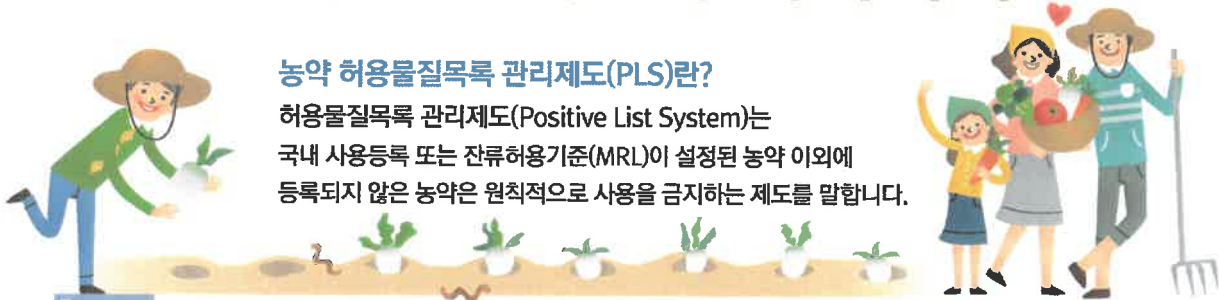
- 1차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 시행)
*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커피원두, 피스타치오 등
- 2차 : 나머지 농산물('17.8 행정예고, '19.1.1. 전면 시행)

- * 농약잔류허용기준 : 식품중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 ** 농약잔류허용기준 결정요인 : 농약의 1일 섭취허용량(ADI), 국민의 평균체중(55kg), 농산물별 1일 섭취량 및 식품섭취량, 적정농약살포기준에서의 수확물중 농약잔류량

= 잔류농약 안전관리 체계(관련법령) =			
구 분	소관부처	근거법령	주요내용
농약 등록 및 관리	농 진 청	농 약 관 리 법	• 농약의 등록·유통 관리·안전사용기준 등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식 약 처	식 품 위 생 법	• 국내·수입 식품(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 제정 및 식품안전성검사, 위생시설 관리
농 산 물 안 전 관 리	식 약 처 (농식품부)	식 품 위 생 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국내농산물의 안전성 허용기준초과여부 조사

간간해진 농약사용기준 더욱 안전해진 우리먹거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땅콩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유자종실류 |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료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열대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2차(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Q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미만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일률기준 적용 (0.01ppm 이하 적합)

농업인 농약사용 실천

-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농약 구매 시 >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 >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등록 농약 검색은 →

<http://pis.rda.go.kr>

검색

더욱 간간해진 농약사용기준 더욱 안전해진 우리먹거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견과류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유제품 | 참깨, 헤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유로 및 감마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열대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2차(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일률기준 적용 (0.01ppm 이하 적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본부 식품기준기획관

<http://www.mfds.go.kr>
1577-1255



농업인 농약사용 실천

-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농약 구매 시 →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 →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등록 농약 검색은 → <http://pis.rda.go.kr>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잠깐!

농약 사용전에
농약포장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❶ 작물 **원배출**에 등록되어 있나요?
- ❷ 사용 **시기·횟수·용량·희석배수**를 잘 지키셨나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여 2019년 1월부터
더욱 엄격해지는 농약안전성검사(PLS)에 대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PLS

2019년 1월 1일
농약안전성기준 강화

기준 초과시 해당농산물 폐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해당 작물 및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사용 시기·횟수·용량·희석배수를
잘 확인하고 농약을 사용합시다 ”

 농림축산식품부